예산총칙

제1조: 2018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 천원)

		회	계	별		세입.세출 예산총액	일시차입 한 도 액
			계			434,625,025	13,038,751
1.	•	일	반	회	계	425,938,297	12,778,149
2.	•	특	별	회	계	8,686,728	260,602
	의	豆	급	여 기	금	957,819	28,735
	주		차		장	6,281,541	188,446
	주	거 흰	- 경 7	내 선 시	나 업	370,400	11,112
	발	전 소 주	변지	역 지 원	사 업	331,500	9,945
	지	하	수	관	리	745,468	22,364

제2조: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3조: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음.

제4조: 계속비사업은 없음.

제5조: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2,600,000천원이다.

제6조: 일반회계 예비비는 1,716,200천원으로 한다.

제7조: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

재무활동 경비,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 경비,

재해대책 및 복구비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